

## 제4절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sup>22</sup>

### 1.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내용		예	아니오
01	뉴스도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02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고 뉴스 기사를 이용하나요?		
03	언론사 또는 신탁관리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구매)했나요?		
04	허락된 범위 내에서 뉴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나요?		
05	뉴스기사 링크를 사업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나요?		

뉴스기사가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가?	Yes No	뉴스 기사 합 법 이 용
뉴스기사가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는가?	Yes No	
뉴스기사를 3줄 이상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Yes No <small>뉴스 제목 혹은 1~2줄만 사용할 경우</small>	
뉴스기사의 내용이 단순 사실 보도인가? [날씨, 인사, 부고, 주식시세 등]	No Yes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것인가?	No Yes	
초·중·고등학교 등 공공교육기관에서 '수업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No Yes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체결 저작권(재)언론사 또는 저작권신탁관리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	Yes	

뉴스저작물 이용시 확인 절차

22 기관의 뉴스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에서 집필하여 주셨습니다.

## 2. 뉴스저작물 합법 이용을 위한 가이드

### 1) 뉴스저작물의 성격

- 뉴스저작물이란 시사보도, 여론형성,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의 예시에 따르면 신문, 인터넷 신문의 기사(텍스트)는 어문저작물이며 보도사진은 사진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방송사에서 제작, 보도한 영상은 영상저작물이며 방송기자의 보도(대본)는 어문저작물입니다.

구분	상세설명
어문저작물	신문·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된 뉴스
	방송뉴스 등에서 기자가 보도한 뉴스는 무형의 구술에 의한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
음악저작물	방송뉴스 등에 포함된 음향 및 고유의 음악
영상저작물	방송·인터넷 등에서 영상으로 제작, 보도한 뉴스

#### 뉴스저작물의 종류

- 뉴스는 언론사와 기자의 창작물로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이 많아지면서 뉴스의 저작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뉴스 복제, 수정, 재배포가 손쉬워지면서 뉴스의 저작재산권의 심각한 침해는 물론 가짜뉴스 확산 등 언론의 위기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 뉴스저작물 이용허락

####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 뉴스를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이용방법과 조건을 정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나 단체,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뉴스를 복제하거나 게시, 배포하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뉴스 기사와 보도사진, 뉴스 영상은 모두 업무상저작물이므로 언론사(법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기자로부터 기사를 사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인터뷰를 했거나 취재원으로서 기사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또는 보도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취재기자로부터 구두 허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로부터 받은 허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해당 언론사로부터 서면 또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해도 출처만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논문이나 보고서에 참고문헌을 적거나 언론보도에서 타 언론사의 기사를 인용할 때 쓰는 출처표시에 익숙해져 생긴 오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조항은 법에 따라 저작권권을 제한할 때 이용자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을 허락 없이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3) 뉴스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 또는 신탁관리기관의 이용허락 없이 아래와 같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거나 법 제136조에 의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뉴스를 접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는 기자의 창작 노력이 깃든 저작물입니다. 힘들게 만든 뉴스가 정당한 유통 경로를 통해 제값에 이용되어야 언론사는 양질의 뉴스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저작권 침해입니다

- 뉴스 기사(텍스트)를 사내 전산망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 뉴스를 스크랩하여 이메일 등을 통해 내·외부에 전송하거나 복사, 배포하는 경우
-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 뉴스를 게시하는 경우
- 뉴스 기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홍보물에 넣어 인쇄·배포하는 경우
-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은 후 계약 외 매체를 이용하거나, 이용 범위를 벗어나게 이용하는 경우
- 녹화 장비를 이용해 방송뉴스를 녹화하거나 기사(텍스트)를 추출해 이용하는 경우
-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용역업체(홍보대행사, 모니터링대행사 등)를 통해 뉴스를 제공받아 내·외부에 공유하는 경우
- 타 기관(유관·상급기관)에 제공된 뉴스스크랩 프로그램 ID를 빌리거나 공유하는 경우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뉴스 게시판 형태로 무단전재

#### 4)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의 역할

-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권리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권리를 직접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신탁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와 출판권자, 저작권집권자 등 권리자들을 위해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을 저작권신탁관리업이라고 하는데, 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유일한 신탁관리기관으로서 뉴스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스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거나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맺고 유료로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국내 106개 언론 매체의 뉴스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2020년 7월 현재).

구분	매체명	매체수	
신문	전국종합일간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1
	지역종합일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남일보, 경북도민일보, 경북매일신문, 경북일보,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국제신문, 기호일보, 남도일보,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동양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새전북신문, 영남일보, 울산매일, 인천일보, 전남일보, 전라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제주신문,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	40
	경제일간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건설경제	11
	스포츠일간	스포츠경향, 스포츠동아, 스포츠서울, 스포츠월드, 일간스포츠	5
	영자일간	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코리아헤럴드	3
	전문일간·어린이신문	디지털타임스, 소년한국일보, 어린이강원, 어린이동아, 전자신문, 환경일보, 농민신문	7
	종합·전문주간	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일요신문, 중앙선데이, 주간한국	5
	지역주간	당진시대, 옥천신문, 흥성신문, 광양신문, 김포신문, 뉴스서천, 영암우리신문, 영주시민신문, 원주투데이, 주간고양신문, 주간설악신문, 평택시민신문	12
인터넷신문	노컷뉴스, 뉴스핌, 대덕넷, BreakNews, EBN산업뉴스, PD저널, 데일리안	7	

방송사	KBS, MBC, SBS, YTN, OBS	5
계		106

뉴스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언론사 현황(2020년 7월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저작권을 신탁하지 않은 언론사의 뉴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해당 언론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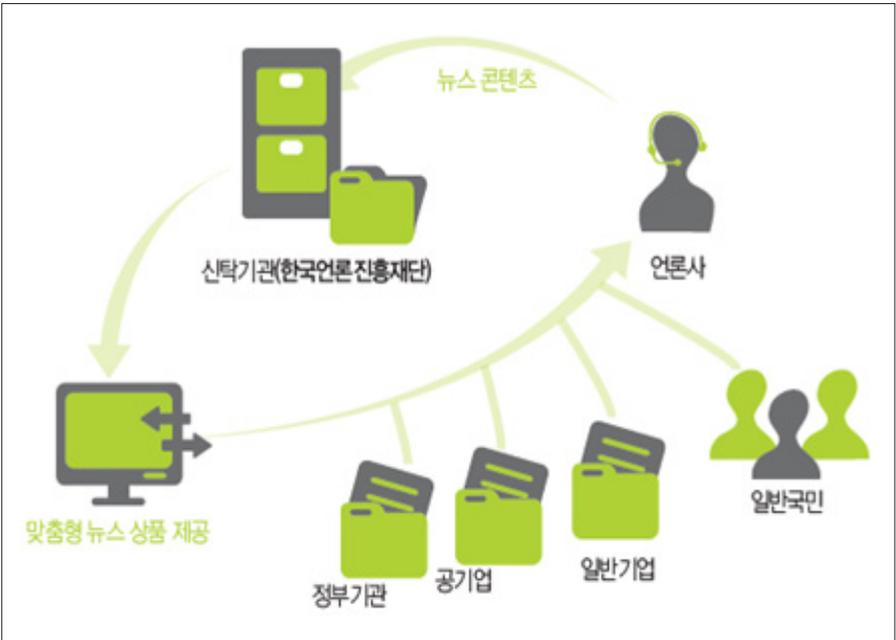
5) 뉴스저작권 상품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용자가 용도와 이용형태에 따라 뉴스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뉴스저작권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는 셈입니다. 뉴스저작권 상품은 이용자 수와 이용 방법에 따라 가격이 차등 적용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저작권자들과 협의·조정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구분	명칭	설명
스크랩 상품	내부라이선스	이용자가 전자스크랩, 내부전산망, 모바일 접속 등의 방법으로 임직원들에게 뉴스를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는 상품. 이용자의 사업 및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뉴스에 한함
	통합라이선스	내부라이선스에 더해 홈페이지 게시, 대외발송 등 뉴스를 외부로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는 상품
	라이선스 플러스	내부·통합라이선스 상품에 스크랩대행 영역이 추가된 상품
이용 방법	전자스크랩	사용자가 전용프로그램(아이서퍼/스크랩마스터)을 이용해 뉴스를 검색, 스크랩하고 출력할 수 있음
	내부전산망	뉴스 스크랩이나 기사 원문을 임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내부 전산망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용
	모바일	내부전산망에 게재된 뉴스를 소속 직원들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홈페이지	기관(기업 또는 단체) 홈페이지 및 공식 SNS 채널에 관련 뉴스를 게재할 수 있음. 단, 이용 계약 시 URL 또는 계정을 지정해야 함
	대외발송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이용하여 관련 뉴스를 전송·배포할 수 있음
	스크랩대행	사용자가 라이선스 상품을 구매한 후 관련 기사를 스크랩하여 제공하도록 대행사에 의뢰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스크랩 상품 개요

-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용계약을 맺고 구매했거나 언론사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도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뉴스저작권 이용 계약, 이용료 징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유통대행사를 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흔히 사용하는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도 유통대행사를 통해 운영합니다.



뉴스저작물 이용 도식

## 6)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뉴스저작물

- 뉴스 기사 중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업무상저작물인 뉴스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해당 조항은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남은 권리에만 적용되고 이미 만료된 권리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962년에 공표된 저작물의 보호기간은 1963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50년이 지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할 때는 공표한 다음해부터 기산합니다. 옛날 신문 기사를 이용할 때에는 196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기사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 저작권법 제7조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발령, 부고, 기상정보 등은 물론 경제 동향, 사건사고, 재판 상황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일 경우 기자의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반 이용자들이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단순한 사실 전달의 수준을 넘어선 기사’를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고, 기사 속에 기자의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업체나 기관에서 제품 또는 사업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해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보도자료가 거의 그대로 기사화되었다면 이를 제공한 기업이나 기관은 해당 기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자료를 편집, 재구성하여 기자가 기사를 작성했다면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7) 뉴스 링크이용에 관한 사항

- 기사의 URL을 링크해 SNS에 게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등 링크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원하는 언론사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링크하는

단순링크는 물론 개별 기사나 사진을 바로 링크하는 직접링크(딥링크)도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사명과 기사제목, 기사의 일부분을 쓰고 링크를 거는 방식도 흔히 사용되는데 기사의 첫 한두 줄 정도라면 대체로 문제가 없습니다. 포털이나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기사를 펴가기, 공유할 때 나타나는 화면을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 직접링크는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전송에 해당하지 않아 관철지만 직접링크를 업무적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추구했다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링크 자체는 적법하지만 여러 언론사의 기사 링크를 이용해 영리를 취하고 언론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 음악 저작물 등 다른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 RSS(Rich Site Summary) 등을 이용해 뉴스를 이용하거나 배포한다면 저작권 침해는 물론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링크방식	예시
<p>단순링크 (Simple Link)</p>	<p>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홈페이지(메인 페이지 또는 초기 화면)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p> <p>☞ 합법</p>	
<p>직접링크 (Deep Link)</p>	<p>원하는 정보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 해당 하위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p> <p>☞ 합법</p>	
<p>프레임링크 (Frame Link)</p>	<p>다른 사이트의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링크</p> <p>☞ 불법</p>	

임베디드링크  
(Embedded Link)

홈페이지 내부에 음악, 동영상 등(플래시 포함)의 파일을 연결, 실행시키는 링크  
☞ 불법



사이트 링크 방식과 합법 여부

### 3. FAQ

**Q. 기사를 편집해 홈페이지에 올리고 출처를 표시했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게 편집해 게시하는 행위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때의 의무를 정한 것으로, 출처 표시가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우리 회사 관련 뉴스를 사내 게시판에 올려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A. 이용자가 관련된 뉴스라 하더라도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귀속되므로 게시하려면 사전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기업이나 기관에서 기사 작성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대표나 관계자의 인터뷰 기사도 언론사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뷰에서 발언한 부분만 인용하는 경우는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기사를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때에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A. 뉴스 기사를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공익 목적이라 해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공익 목적, 비영리 목적이라는 요건만으로 자유 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기사를 요약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A. 요약문이 기사의 총괄적인 뜻만 살리고 전혀 새로운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증감 및 수정, 일부 발췌, 원래 표현을 단순히 축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기사 제목과 링크를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A. 기사 제목과 그 기사가 있는 언론사의 홈페이지 링크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기사 제목과 함께 언론사명, 발행일자, 기사의 첫 한두 줄 정도를 함께 보내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만 기사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 방송사 뉴스 영상을 캡처해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저작권 침해인가요?**

A. 방송을 녹화한 동영상, 녹음한 파일, 대본 등 모든 콘텐츠는 뉴스 저작물입니다. 방송 뉴스 캡처 화면 역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Q. 네이버나 다음 뉴스처럼 각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 기사 전문을 쓰지 않고 제목, 썸네일, 직접링크만 제공하면 괜찮나요?**

A.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 Q. 뉴스를 이용해 유튜브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 A. 유튜브에 뉴스 영상을 삽입하거나 기사를 전재, 낭독하는 행위도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아주 적은 분량을 이용하거나 비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4. 상담 사례

### Q. (뉴스 기사에 대한 저작권 인정 범위) 신문사 기자로 일을 하고 있는 甲은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옮겨서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요?

- A. 판례는 “저작권법 제7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창작물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제5호에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원래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은 외부로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일 뿐 그 표현의 내용이 된 사상이나 사실 자체가 아니고, 시사보도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정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창작적인 요소가 개입된 여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표현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에 그친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일간 신문의 편집국장이 연합뉴스사의 기사 및 사진을 복제하여 신문에 게재한 사안에서, 복제한 기사 및 사진 중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어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5350판결).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甲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이 옮긴 다른 뉴스사의 기사와 사진이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기사가 독창적이고 개성있는 표현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정도라면 甲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사례)

## Q. 해외 언론 기사를 학원 교재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A.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고, 대부분의 외국 저작물들은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을 영업으로 하는 기관 등에서 해외 언론 기사 등을 복제·편집한 교재를 만들어 수강생들에게 배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 또한 명시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해당 기사 등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이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영국의 모 시사주간지가 한국의 한 외국어 학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교재를 발행·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은 물론, 해당 제작물 일체를 폐기하고 해당 행위를 금지할 것을 명한 바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해당 학원관계자 등은 저작권법 위반죄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외 언론 기사들을 활용하여 교재를 제작·배포·전송하거나 강의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사례집)

영국 시사주간지 발간사인 원고가 국내 모 어학원의 원장과 직원 등을 피고로 하여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해당 주간지를 교재화하여 복제, 판매, 강의한 사실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및 배포권을 침해하였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각종 제품들과 파일, 광고물 등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선고 2014가합505395판결)